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12. 8.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12. 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97. 12.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환)

가. 제안이유

- 내부부지침(97. 3. 20.)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크기 정액요금제 도입
- 원·정수 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에 따라 부족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절수의지 고양을 위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음

나. 주요골자

- 기본요금제 폐지 및 구경별 정액요금 신설
 - 기본요금제 폐지사유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로 발생한 불만해소
 - 요금체계 개정 내용
현행 기본요금 + 1단계 → 구경별정액 + 2단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전용 공업용수도를 사용하는 기관은?	○ 아남산업, 열병합발전소 2개소임.
○ 공업용 수도요금 평균 인상률은?	○ 평균 4% 인상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호
의결년월일	97. 12. 20.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2. 8.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내부부지침(97. 3. 20.)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크기 정액요금제 도입
- 원·정수 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에 따라 부족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절수의지 고양을 위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음

□ 주요골자

- 기본요금제 폐지 및 구경별 정액요금 신설(안 제26조 별표1)

- 기본요금제 폐지사유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로 발생한 불만해소

- 요금체계 개정내용(변경)

업 종

현 행 체 계

개 정 체 계

전용공업용	기본(100톤) + 1단계	구경별정액 + 2단계
-------	----------------	-------------

□ 기타 참고사항

부천시 요금조정계산표

1. 요금조정계산표

조 정 전 (I)							조 정 후 (II)							전후대비 (II-I)		
업종별	단계별 (분)	요금 부과 급수전	요금 (원/분)	요금 (분)	조정 총액 (천원)	본당 요금 (원/분)	업종별	단계별 (분)	요금 부과 급수전	요금 (원/분)	요금 (분)	조정 총액 (천원)	본당 요금 (원/분)	증 감 액		인상율 (%)
														조정액 (천원)	본당요금 (원/분)	
합계		2,751,969		79,966,763	21,499,649	268.9	합계		2,751,969		79,966,763	23,625,249	295.4	2,125,600	26.5	9.8
가 정 용	소계	2,594,936		56,028,301	9,713,823	173.4	가 정 용	소계	2,594,936		56,028,301	11,377,809	203.1	1,663,986	29.7	17.1
	0~10	425,996	1,300(130)	24,671,372	3,373,417	136.7		0~10	425,996	160	24,671,372	3,947,420	160	574,003	23.3	17
	11~20	993,945	170	20,695,455	3,518,227	170		11~20	993,945	200	20,695,455	4,139,091	200	620,864	30	17.6
	21~30	971,129	230	7,641,028	1,757,436	230		21~30	971,129	260	7,641,028	1,936,667	260	229,231	30	13
	31~40	159,108	300	1,243,120	372,936	300		31~40	159,108	350	1,243,120	435,092	350	62,156	50	16.7
	41~50	21,705	350	382,465	133,863	350		41~50	21,705	450	382,465	172,109	450	38,246	100	28.6
	51~	23,053	400	1,394,861	557,944	400		51~	23,053	500	1,394,861	697,430	500	139,486	100	25
업 무 용	소계	86,364		11,999,289	4,721,984	393.5	업 무 용	소계	86,364		11,999,289	4,909,849	409.2	187,865	15.7	4
	0~20	25,293	5,000(250)	1,603,344	431,820	269.3		0~20	25,293	280	1,603,344	448,936	280	17,116	10.7	4
	21~50	28,685	320	1,602,650	512,848	320		21~50	28,685	340	1,602,650	544,901	340	32,053	20	6.3
	51~100	17,079	370	1,363,115	504,353	370		51~100	17,079	380	1,363,115	517,984	380	13,631	10	2.7
	101~300	7,861	420	2,353,910	988,642	420		101~300	7,861	430	2,353,910	1,012,181	430	23,539	10	2.4
	301~	7,446	450	5,076,270	2,282,321	450		301~	7,446	470	5,076,270	2,385,847	470	101,526	20	4.4
명 업 용	소계	69,165		8,837,118	6,040,915	683.6	명 업 용	소계	69,165		8,837,118	6,274,476	710	233,561	26.4	3.9
	0~30	8,107	12,000(400)	2,066,813	853,932	413.2		0~30	8,107	480	2,066,813	992,070	480	138,138	66.8	16.2
	31~50	5,457	590	1,220,141	719,883	590		31~50	5,457	600	1,220,141	732,085	600	12,202	10	1.7
	51~100	33,236	680	2,778,209	1,889,182	680		51~100	33,236	690	2,778,209	1,916,964	690	27,782	10	1.5
	101~	22,364	930	2,771,955	2,577,918	930		101~	22,364	950	2,771,955	2,633,357	950	55,439	20	2.2
목 탕 용 (1종)	소계	1,413		1,710,588	809,308	473.0	목 탕 용 (1종)	소계	1,413		1,710,588	840,656	491	31,348	18	3.8
	0~200	290	58,000(290)	245,547	81,954	333.8		0~200	290	290	245,547	71,209	290	-10,745	-43.8	-13.1
	201~300	111	300	105,995	31,798	300		201~300	111	330	105,995	34,978	330	3,180	30	1.0
	301~500	143	460	185,806	85,471	460		301~500	143	480	185,806	89,187	480	3,176	20	4.3
	501~	863	520	1,173,240	610,085	520		501~	863	550	1,173,240	645,282	550	35,197	30	5.8
목 탕 용 (2종)	소계	79		44,122	45,192	1,024.3	목 탕 용 (2종)	소계	79		44,122	47,304	1,072	2,112	47.7	4.7
	0~200	12	80,000(400)	13,836	6,320	456.8		0~200	12	500	13,836	6,918	500	598	43.2	9.5
	201~300	10	700	6,259	4,381	700		201~300	10	750	6,259	4,694	750	313	50	7.1
	301~500	17	1,200	9,881	11,857	1,200		301~500	17	1,250	9,881	12,351	1,250	494	50	4.2
	501~	40	1,600	14,146	22,634	1,600		501~	40	1,650	14,146	23,341	1,650	707	50	3.1
전 용 공 업 용	소계	12		1,347,345	168,427	125	전 용 공 업 용	소계	12		1,347,345	175,155	130	6,728	5	4
	0~100	1	125,000(125)	1,130	150	132.8		0~100	본당	130	1,130	147	130	-3	-2.8	-2.1
	101~	11	125	1,346,215	168,277	125		101~	11	130	1,346,215	175,008	130	6,731	5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요금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를 “사용료요금표에 의한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량요금의”로 하고 별표1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별표1)

사 용 료 요 율 표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사 용 량 요 금	
계량기구경별	요 금(원)	사 용 량(m³)	요 금(원)
13m/m	620	1~100	130
20m/m	1,300	101 이상	130
25m/m	2,010		
32m/m	3,590		
40m/m	4,900		
50m/m	8,590		
75m/m	16,270		
100m/m	27,120		
150m/m	60,220		
200m/m	97,000		
250m/m	143,870		
300m/m	200,830		
350m/m	251,580		
400m/m	282,9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용료) 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요율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월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사용료 요율표에 의한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량 요금의
제6조(급수장치손료) ①급수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부천시수도급수조	(삭제)
레 제32조(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7조~제8조(생략)	제6조~제7조(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사용료요율표				사용료요율표				
요금	구분	수량(m³)	금액(원)	비고	계량기구경변정액요금		사용량요금	
					계량기구경별	요금(원)	사용량(m³)	요금(원)
기본요금	1~100	12,500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징수	13m/m	620	1~100	130	
				20m/m	1,300	101 이상	130	
				25m/m	2,010			
초과요금	101이상	125	초과요금은 1m³ 초과당요금임	32m/m	3,590			
				40m/m	4,900			
				50m/m	8,590			
				75m/m	16,270			
				100m/m	27,120			
				150m/m	60,220			
				200m/m	97,000			
				250m/m	143,870			
				300m/m	200,830			
				350m/m	251,580			
				400m/m	282,910			